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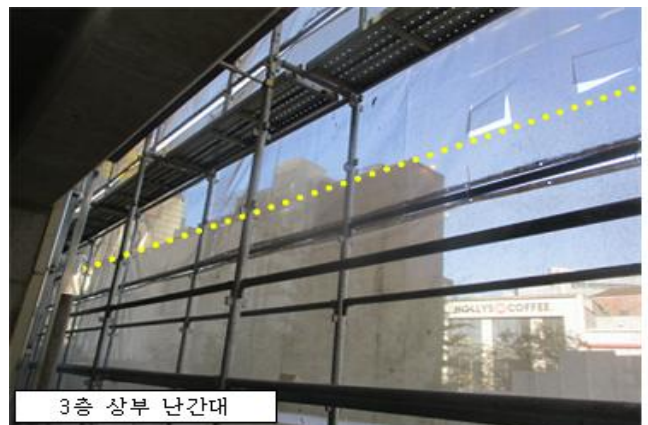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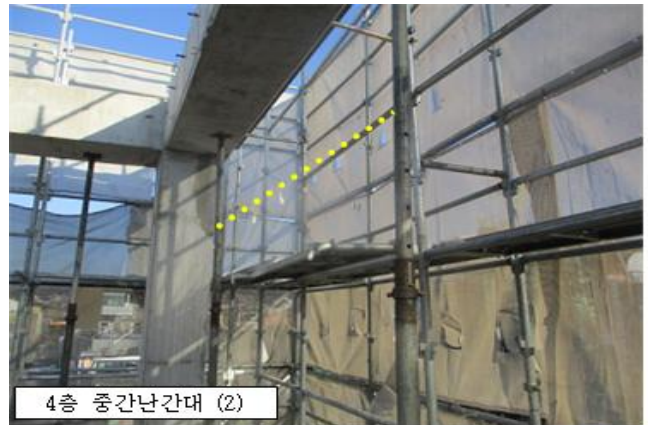
[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공사]

- 점검일시 : 2022.01.11 (화)
- 점검결과
- ◆ 점검자 : 최영준

○ 추락재해 예방(건축부)

- 1) 지상4층 및 3층 외부 시스템 비계 일부구간에 안전난간이 임시 해체되어 있어 작업자 이동간에 추락재해 발생우려가 있으니 전구간에 대하여 확인을 실시하고 필요조치를 실시하여 관리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,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건축부)

- 2-1) 3층 견출작업장으로 이동하는 통로는 안전난간이 없는 사다리형 자재를 경사구간에 거치하여 사용중으로 작업자 이동간에 전도재해 발생우려가 있고,
- 2-2) 견출작업장 진입구간이 매우 협소하고, 지지대가 없는 개구부 발생구간을 통하여 이동할 경우 작업자 전도 및 추락 등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으니 보안을 실시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, 제23조(가설통로의 구조), 제30조(계단의 난간)



○ 전도재해 예방(건축부)

- 3) 작업장 주출입구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이동식 비계는 단차발생 구간에 거치되어 있고, 평탄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테인레스 자재를 받침으로 사용하고 있어 작업중에 외력에 의한 흔들림으로 전도재해 발생우려가 있으니 평탄성 확보 및 아웃트리거 설치 등 보안 후 작업을 진행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건축부)

- 4-1)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모든 작업구간에는 주변에 인화성 물질이 없도록 정리정돈을 실시하기 바람, 필히 소화기를 비치하기 바람.
- 4-2) 고체연료를 불안정한 상태로 사용하고 있어 충격에 의한 전도시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매우 높으니 재발되지 않도록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기 바람.



- 4-3) 또한, 가스용시 위험물보관소에서 직접 가스인출사용을 지양하고, 작업종료 후 확인 및 가스용기에 역화방지기를 부착하여 사용하기 바람.

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36조(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의 장소 등), 제289조(안전기의 설치)

